

檢 討 報 告

1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2. 提出日字 : 1998. 3. 31

3. 提案理由

- 재난관리법이 전문개정('97.8.30 법률 제5404호)되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도 전문개정('98.2.24 대통령령 제15662호)이 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므로써, 지역재난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자 함

4. 主要骨子

-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기금관리는 서산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,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함(안 제4조).

-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-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함(안 제7조).

5. 檢討意見

- 본 조례(안)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으로써,
- 각종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역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
-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·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- 본 조례(안)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